

의안번호	2217691
의 퇴 인	허영 의원
회 답 일	2026. 3. 31.
추계번호	26C1633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¹⁾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13조의2 (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)	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3조의2 (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현재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안부 확인, 생활 개선 지원,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,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

－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69억원이 편성되어 있음(국고보조율 50%)

1) 안 제14조에 따라 고독사 예방 협의회 최대 인원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고, 민간위원의 수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/2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경우, 민간위원 추가 위촉으로 회의수당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. 다만, 2025년 말 기준, 해당 협의회의 총 위원수가 19명이고, 그중 9명이 민간위원임을 고려할 때, 개정안의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~3인의 민간위원이 추가로 위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. 민간위촉 위원에 대한 수당 단가와 회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예산 내에서 안 제14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.
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가 수립·시행할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개정안의 내용은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되어있어, 현 시점에서는 실제 개정안 시행 시 신규로 실시될 사업이나 확대될 기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음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